

서울고등법원 2023. 2. 8 선고 2022나203284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3. 2. 8 선고 2022나2032840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1가합3825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정호길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근수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동진, 담당변호사 김택준

변론 종결2022. 11. 23.

판결 선고2023. 2. 8.

제1심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1가합3825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24.에 체결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194,1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는, 원고가 주채무자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해 대여금채권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주채무인 위 대여금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에 관한 C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0호증, 을 제8, 9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22. 7. 18.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위 대여금채권에 관한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공시송달을 통해 2022. 10. 14.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단95730)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채무인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는 관련 소송 제기 전인 2021. 12. 30.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C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이미 소멸하였다. 따라서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해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해 공시송달로 진행된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회사가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지 않아 원고가 승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위 연대보증채무가 이미 소멸하였음에는 영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회사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은 것을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은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참조), C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소멸하였음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전지원

판사이재찬

판사김영진

별지